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특별지원학급 및 특별지원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란

초등학교는 재학하고자 하는 해의 4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만 7세부터 만 12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재학하고자 하는 해의 4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만 13세부터 만 15세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의무교육학교는 재학하고자 하는 해의 4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만 7세부터 만 15세 생일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니시노미야시립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경우

니시노미야시립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면 교육위원회로 취학신청을 해주십시오. 사립학교나 외국인학교 등에 아이를 입학시키려면 해당 학교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니시노미야시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듬해 4월부터 초등학교 또는 의무교육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 되는 아이가 있는 보호자 또는 니시노미야시로 이사 온 보호자에게 취학신청서 등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취학신청서가 오지 않는 경우 교육위원회나 가까운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 교육위원회 학사과 0798-35-3850

○특별지원학급, 특별지원학교란

장애 등이 있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니시노미야시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원학급 및 특별지원학교에서 장애 중별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점이나 상담 등이 있으시면 교육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 교육위원회 특별지원교육과 0798-35-3897

○일본어지도

니시노미야시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의 초등학부, 중학부)에 재적하고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귀국 아동, 외국인 아동학생에게 일본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 종합교육연수과 0798-35-3857

○비용에 대해서

시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는 무료입니다. 학용품비, 교외활동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의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힘든 경우에는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학교나 교육위원회와 상담하십시오. 9-7 취학 원조, 장학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 교육위원회 학교사무과 0798-35-3851

○방과후 혼자 있는 아동을 위한 아동육성센터 (留守家庭児童育成センター, 초등학교아동보육)

보호자가 취로 등으로 인해 낮 동안 가정내에 없는 초등학생 1-3학년 아동(일부 센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또는 6학년까지, 장애가 있는 아동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을 대상으로, 생활과 놀이를 통해 건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육성센터과

0798-35-3659

※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